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
제297회 제1차 정례회

대구광역시달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【의원발의】
검토보고서



2023. 6.

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2023. 6. 9.

기획행정위원회

1. 검토과정

- 안건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발의자: 손범구 의원 등 7명(이진환, 장호섭, 박정환, 도하석, 김장관, 권숙자)
- 발의일자: 2023. 5. 26.(금)
- 회부일자: 2023. 5. 26.(금)
- 검토기간: 2023. 5. 26.(금) ~ 6. 2.(금)

2. 개정이유

- 주민과의 최일선 접점에서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전달 등 지방행정과 주민의 가교로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통장에 대한 처우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대학생인 통장 자녀의 장학금 지급금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대학생인 통장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액 확대(안 제6조제1항)
 - 【 “연 100만원” ⇨ “연 200만원” 】

4. 참고사항(관계법령 등)

- 관계 법령 및 현행조례
 - 「지방자치법」 제7조
 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」
 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통·반 설치 조례」

- 비용추계: 비대상
- 입법예고(2023. 5. 26. ~ 6. 5.)결과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액 중 현재 대학교 수업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장학금 지급실태를 고려하여 연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것으로, 통장의 학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행정 최일선에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통장의 사기진작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자 함.
- 한편, 현행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는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시행 및 「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 개정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인 장학금 정액지급 규정 마련 및 지급대상을 고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 확대하고, 대학생에 대하여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1년 4월 1일 의원발의로 전부개정한 바 있음.
- 본 개정안은 통장자녀 대학생 장학금 지급금액의 현실화를 통해 통장의 지역사회 봉사자라는 궁지를 높이고 장학금 지급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, 대구지역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장학금 지급제도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.
-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【관 계 법령】

□ 지방자치법

제7조(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 등의 명칭과 구역) ① ~ ④ 생략

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.

⑥ 생략

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

□ 초·중등교육법

제2조(학교의 종류) 초·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.

1. 초등학교
2. 중학교·고등공민학교
3.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
4. 특수학교
5. 각종학교

제10조의2(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)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무상(無償)으로 한다.

1. 입학금
2. 수업료

3. 학교운영지원비
 4. 교과용 도서 구입비
- ② 제1항 각 호의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, 학교의 설립자·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이를 받을 수 없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의 설립자·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.
- [시행일]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순차적으로 시행
1. 2020학년도: 고등학교 등 2학년 및 3학년의 무상교육
 2. 2021학년도 이후: 고등학교 등 전학년의 무상교육

고등교육법

제2조(학교의 종류)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.

1. 대학
2. 산업대학
3. 교육대학
4. 전문대학
5. 방송대학·통신대학·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(이하 “원격대학”이라 한다)
6. 기술대학
7. 각종학교

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(행정안전부훈령)

그룹	편성 목	설 정 (통계 목포함)	비고
300	301 일반보전금	<p>04. 장학금 및 학자금</p> <p>1.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(국고대여장학금은 제외)</p> <p>가. 통·리장 자녀, 새마을지도자 자녀 등 학업성적이 우수 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등에 대해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(법령상 기준액이 없는 경우, 과거 교육부 및 시·도 교육청의 고시에 따른 기준 공납금 수준을 참고하 여 결정)</p>	

【 현행 및 관련 조례 】

□ 대구광역시달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통장의 사기를 드높이기 위하여 그 자녀에게 지급하는 통장 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장학생의 자격) 장학생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통장(이하 “통장”이라 한다)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.

제3조(추천) 장학생은 매년마다 동장의 추천을 받아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선정한다.

제4조(선발) ①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도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선발한다.
② 국가·지방자치단체·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비(이하 “외부 장학금”이라 한다)를 지급받은 자는 본 장학금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. 다만, 그 외부 장학금 지급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5조(장학생 정원) 장학금 지급 인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한다.

제6조(장학금)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고등학생은 연 50만원 이내, 대학생은 연 100만원 이내에서 예산의 사정에 따라 지급한다.
②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외부 장학금과 본 장학금의 차액을 지급한다.

제7조(장학금의 지급시기)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.

제8조(지급정지)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.

1. 보호자인 통장이 해촉 된 때
 2. 장학생이 퇴학,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
 3. 학교장, 대학의 총장 등으로부터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
- ② 동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9조(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대구광역시달서구 통·반 설치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7조제5항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하부조직)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, 통에는 반을 둔다.